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TERNSHIP(J-1) Participant Guide

For Training/Internship Program

Staying In U.S.A

(Korean)

ESOL EDUCATION Co. Ltd.,

Copyright © 2002 by ESOL Educatuion. All rights reserved

J-1 Visa (문화교류비자)

J-1 비자는 문화나 학문적 교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학생이나 학자 또는 훈련생이나 레지던트 등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J 비자는 쿼터로 인해 H-1B 비자를 받기 어려운 학사학위 소지자나 동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30일 동안의 'Grace Period'(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에서 인정한 교환방문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자나 스폰서는 미국 국무부에서 장려하고 인정한 교환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초청장을 보낼 수 있으며, 본인이 설립할 회사가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초청자의 자격으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J-1 비자는 종류에 따라 '본국 의무 거주'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끝난 후 본국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거주해야 미국의 다른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nternship, Work & Travel, Au-fair 용 미국 Visa 는 **J-1 Visa** 입니다. **Exchange Visitor (교환방문객 비자), Culture Exchange (문화교류비자)** 이며, **Education Extension (교육의 연장 프로그램)**로써 미국 국무성(USIA) 비자부서 담당이며 **취업관계 비자가 아닙니다.** J 비자는 국제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이며, 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 그리고 저희 **인턴쉽(Trainee)** 및 W&T, 오페어 참가자 가 문화교류방문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문자들은 자국 정부나 미국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 그리고 전문 IAP 스폰서기관으로부터 후원 및 지원 그리고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심사하는 기관은 미국 USIA 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IAP-66(DS-2019)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학연수 및 유학비자는 F Visa, 관광비자는 B Visa 입니다. 취업비자는 H Visa 로 미국이민국(INS) 담당입니다. 미국 현지 일반체류기간은 12 개월이며, 최대 18 개월입니다. (주)이솔교육을 통해서 출국하시는 인턴들은 12 개월 계약에 현지 고용주의 허락이 있을 시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J-1 비자신청 자세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 참가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며, (주)이솔교육의 담당자 상담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비자 보증인은 부모님 및 직계가족이 가장 좋으며,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비자 재정보증으로써 이후에 재정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비자보증인은 일반 시중의 금융(은행) 대출 재정보증인과는 틀리게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친인척이라도 선뜻 비자재정보증인은 서줍니다. 이 비자보증인의 자격은 미대사관의 영사가 판단하기에 비자보증인이 한국 국민으로써 충실한 사회구성원인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곧 객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세금(납세의 의무)** 을 충실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 및 여학연수같이 거액의 은행잔고증명서는 요구하지는 않으나 **최소한의 은행잔고 증명**은 해야 합니다. 비자보증은 재산관련 서류가 들어가지만 비자보증인에게는 아무런 금전적 손실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친인척도 대개 망설임 없이 서 줍니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친인척들도 비자재정보증인이라면 어떠한 금전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잘 이해시켜드려야 합니다.

○ 비자신청 시 참가신청자 본인서류

- IAP-66(DS-2019) 원본 및 여권 및 여권용 사진 6 매
- 비 이민 비자신청서(DS-156, 157, 158) 및 교육기관(대학)에서의 성적표와 졸업증서
- 미국대사관 수입인지대 영수증(한미은행-100\$) 및 비자택배영수용지, Training(Job) offer, Training Plan
- 학생인 경우 : 영문재학(재적, 휴학)증명서, 영문성적증명서, URP Letter
- 졸업생(직장인)인 경우 : 영문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원명(세무서),고용주 추천장(귀국 후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등)
- 재정보증인과 본인과의 관계가 나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비자신청 시 재정보증인 서류

일반 직장인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11 개월), 은행통장 영문 잔고증명서, 사업자등록/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아래와 같이 비자보증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발행한 월급명세서, 급여기록 통장사본, 적금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공무원증,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 증명원, 종합 소득세 납세증명원, 은행통장 영문 잔고증명서
- 아래와 같이 비자보증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의 거래통장 사본, 명함, 자격증, 면허증사본, 재산세납부증명서, 보험증서 건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의 재산관련서류, 기타 월 또는 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세, 지방세)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가능한 모든 구비서류의 발행일은 비자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행 안되면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첨부)도 가능합니다.
- 비자재정보증은 부모님 및 가족이나 친인척만 가능하며 가능한 3-5년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 은행통장 복사본은 영문이름이 나와야 하며, 간혹 복사본이 아닌 진본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 직장인중 월급이 은행으로 입금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득금액증명이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공무원증 사본을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 농(어)업에 종사자는 조합원 증명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DS-2019

* 현재 IAP-66(DS-2019)이 DS-2019 Form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국무성 (USIA, United State Information Agency)에서 심사 및 발급 담당하는 서류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시일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 또한 이 이유입니다. 현재는 Internship 이나 Work & Travel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에서 믿을 만한 업체 및 기관들을 선별하여, 심사를 한 이후에 이 IAP-66(DS-2019) Form 을 발급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 IAP-66(DS-2019)이 있어야만 현재 우리가 필요한 해외인턴용 비자인 J-1 VISA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USIA (United State Information Agency)가 인정한 교환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 채용회사, 대학 및 기타 스폰서기관 등으로부터 IAP-66(DS-2019) Form 이라는 교환 외국인 신원보증 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IAP-66(DS-2019) Form 을 발급 받기 위하여 외국인들은 이 스폰서기관에게 1년을 기준으로 US \$ 650 - 1,800 (신청비 \$200 포함)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State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DS-2019)

Applicant Name: J.J. Bae
Date of Birth: 09/05/1987
Program Number: P-245386

Applicant Status: J-1
Benefit Cap: 01
Answer Beneficial: YES/N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State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DS-2019)

Applicant Name: J.J. Bae
Date of Birth: 09/05/1987
Program Number: P-245386

Applicant Status: J-1
Benefit Cap: 01
Answer Beneficial: YES/N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State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DS-2019)

Applicant Name: J.J. Bae
Date of Birth: 09/05/1987
Program Number: P-245386

Applicant Status: J-1
Benefit Cap: 01
Answer Beneficial: YES/N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State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DS-2019)

Applicant Name: J.J. Bae
Date of Birth: 09/05/1987
Program Number: P-245386

Applicant Status: J-1
Benefit Cap: 01
Answer Beneficial: YES/NO

IAP-66(DS-2019)은 미국 스폰서기관에서 한국의 인턴쉽 참가지원자에 대해서 J-1 visa 발급 신청 시 심사를 한 번 마쳤다는 서류입니다. 이때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미국내 인턴쉽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관리기관의 신뢰성
2. 미국내 인턴쉽 참가자들이 실습활동을 할 곳(Training Site : 현재, 호텔이나 리조트)의 신뢰성
3. 참가신청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성(Training Plan 의 중요성), 합리성, 당위성, 연관성
4. 참가지원자들의 참가자격(전공, 연령, 경력) - 참가자들의 인턴쉽 전공 연관의 중요성
5. 의료보험과 미국 현지 내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책 (예: 현지에서 몸이 아프거나, 불법체류, 형사, 민사적 사고 등)

스폰서 기관에서는 신청자 모두에게 IAP-66(DS-2019)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목적/신청자격과 카테고리의 연관성과 그리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및 미국현지의 후원자 및 채용회사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확인하며, 이 부분을 판단하여 확실하지 않거나 의구심이 날 경우 IAP-66(DS-2019)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발급을 또한 미국 스폰서 기관의 담당자 판단에 따르기에 개별심사입니다. 대개 전공이 부합되면, 혹은 신청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발급이 되고 있으나 100%발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 사에서 참가신청자에게 전공연관성의 중요도, 인턴쉽의 프로그램 속지 및

IAP-66(DS-2019)의 영문신청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등등의 주문을 하는 것은 이 IAP-66(DS-2019)을 발급 받지 못하면 J-1 visa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IAP-66(DS-2019) 카테고리

- | | |
|--------------------------|-------------------------------------|
| 1. Student(교환학생) | 7. Government Visitor |
| 2. Trainee(인턴쉽) | 8. Research Scholar |
| 3. Teacher (교환선생) | 9. Short-Term Scholar |
| 4. Professor (교환교수) | 10. Specialist |
| 5. International Visitor | 11. Camp Counselor |
| 6. Alien Physician | 12. Summer Travel/Work 미국 대학생 아르바이트 |

여기서 우리 인턴쉽 참가자들은 2 번째인 Trainee 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방학 프로그램인 W&T 는 12 번째인 Summer Travel/Work 가 해당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의 교환교수나 교환학생들이 이 J-1 Visa 를 활용합니다.

미국에 인턴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IAP-66(DS-2019) Form 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비이민 비자 신청서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IAP-66(DS-2019) Form 에는 교환 방문객이 **참가할 프로그램, 목적, 기간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출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IAP-66(DS-2019) Form 에는 또한 현지 체류기간이 참가신청자에 따라 적혀 있으며, 인턴쉽의 경우 6 개월, 12 개월, 18 개월 2 종류가 있습니다. (Trainee 용 J-1 Visa 의 특성상 18 개월이 최대 체류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 년의 실습기간이 체류기간이며, 1 년 실습기간을 마치기 전 3~4 개월 전에 신청하여 채용회사측과 스폰서기관이 연장 허가한다는 심사 후에 6 개월 추가 연장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실습 종료 후 1 달간의 관광체류기간**이 있습니다. 즉 1 년간의 해외인턴기간이 종료된다면 1 개월의 관광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므로 13 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방학 프로그램인 Work & Travel 의 경우 4 개월이 체류기간이며 1 개월의 관광기간이 있습니다. 총 5 개월이 체류기간입니다.) 이 추가관광기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들이 직접 현지에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 년 오픈 비행기 티켓의 기간이 넘어서게 되므로 **미국 현지에서 본인 부담으로 귀국 비행 편**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픈 항공티켓의 최장기간이 1 년) 1 년이 넘어 사용하지 못한 귀국편 편도 비행기표는 귀국 후 담당여행사에 환불을 받게 되며, 약 10-20%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급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발급받는 신원보증서격인 IAP-66(DS-2019)의 보증기간이 곧 실습기간이며, 이 실습기간이 곧 미국 현지에서의 체류기간입니다. 그리고 조기귀국을 원한다면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근무기간이 6 개월도 가능하고 8 개월, 10 개월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비자를 받게 되며, 실습기간 중에 국내에 경사나 조사가 있어 참석을 해야 되면, 미국 실습근무지의 담당자의 승낙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 후 재 출국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의 교통비는 자비부담입니다.

Job Search / Management

우선 인턴쉽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며, 취업 프로그램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주)이솔교육은 서류 대행업체이며 정보제공업체입니다. 참가지원자와 현지 매니저먼트 회사나 스테핑 회사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연결시키는 업체입니다. 미국 업체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참가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주)이솔교육에서는 그 신원을 확인 보증하여, 참가지원서를 받아 미국으로 보내며, 한국 참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시스템 및 서류 작성 등에 미비하므로 (주)이솔교육에서 서류 접수, 수정, 발송 등의 업무를 맡아 합니다. 인턴쉽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참가희망자 스스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주)이솔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Job Search 를 본인이 직접 한다면 자기에게 맞는 조건, 지역, 시기 등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참가자 본인이 미국 실습근무지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인터뷰 날짜를 잡고, 실습조건(수당 및 인턴계획)을 상의하고, 결정하는 영어실력의 부족과 이 전의 서류 작성, 제출 등인 기초적인 문제도 아직은 외국관습 및 작성능력 경험부족으로 참가자 본인이 진행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하여 아직 한국인턴에 대한 검증부족 및 배타성 등등 이런 연유로 미국의 참가지원자들 대신하여 정보제공이나 Job Search 를 해주는 미국기관이 필요하며 그 미국기관의 중간에 인턴피아란 회사가 존재하며, 그 진행절차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Training Site(실습근무지)를 찾는 것은 미리 밝혔지만 저희 (주)이솔교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담당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그리고 제출서류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실습근무지를 찾게 되며, 실습근무지의 인사담당자와 이 미국 매니저(프리랜서)나 매니저먼트 기관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주)이솔교육이나 참가 지원자가 간섭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인턴쉽 실습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시간당 수당, 수당 지급방법, 오리엔테이션, 인터뷰, 포지션 로테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미국회사끼리 서로가 클라이언트 관계가 되며, 이는 그 당사자 회사들끼리의 관계입니다. 그 조건들을 서로가 대외비로 하게 됩니다.) 미국 실습근무지와 미국 매니저먼트 기관의 계약이 끝나면, 미국 매니저먼트에서는 저희에게 Job offer 가 오게 됩니다. 이 Job offer 란 Letter 로 올 수도 있고, 구두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서 및 이력서 등을 보낸 상태에서 이력서 등이 실습근무지로 넘어간 후 Job Search 결과에는 대개 Letter 가 오는 경우가 많으며, 미리 미국기관끼리 인력 숫자를 정한 경우에 한국의 (주)이솔교육으로 몇 월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한 조건이 옵니다. 전공 및 영어실력 등의 참가자격과 그리고 실습수당 및 숙소 등에 대한 실습근무지에 대한 조건 등이 옵니다. 그리고 간혹 경우에 따라 미국 실습근무지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통과가 되어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Job Search 기간에는 참가자나 저희 (주)이솔교육에서는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영어공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오퍼들이 오면 참가지원자는 DS-2019(IAP-66) 신청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서류들은 참가자 본인이 작성하며, 본인이름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류 중에 작문이 있고, 또한 신청 시 금기시 되는 문장들을 실수로 참가지원자가 적을 수도 있기에 (주)이솔교육에서 서류 작성 후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드리나, 근본적으로는 참가지원자들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DS-2019 가 오면 다시 비자준비를 하게 되며, 이 비자는 또한 개별심사이며, (주)이솔교육에서 서류를 받아 번역, 수정, 신청을 하게 되며, 발급은 참가자 자택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 전공 인턴쉽 J-1 프로그램 진행순서

여기까지 중요한 것은 저희 (주)이솔교육 참가자들의 실무능력, 경험, 영어능력입니다. 미국에서의 Job Search 는 매우 힘들며 미국 경제경기도 타게되며,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이해바라며, 또한 미국 기업체들끼리의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회사들끼리의 대외비입니다.

또한, 본 (주)이솔교육에서는 2008년도 미국 국무성 산하 스폰서와의 계약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 잡 오피어를 확인하고 그 잡오피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여 기존에 미국 인턴쉽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문상담 후 1 차 진행비 입금 및 Resume 제출 * 기본 지원서류 안내 (Resume, Cover Letter, Reference, Certificate, Application Form etc) ② 미국 국무성 담당기관 전화영어인터뷰 ③ 미국 실습근무지 전화영어인터뷰(생략가능) ④ Training Offer 발급 승인 ⑤ 2 차 진행비 입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IAP-66(DS-2019) 신청서 안내 및 접수, 발급 신청 ⑦ IAP-66(DS-2019) Sponsor 기관 메일 문의 및 전화영어인터뷰(생략가능) ⑧ IAP-66(DS-2019) 발급승인 ⑨ 출국 항공권 예약 ⑩ 비자서류 안내 및 접수, 발급신청 ⑪ 비자 발급 승인 ⑫ 출국 오리엔테이션 후 출국 |
|---|---|

미국 전공 인턴쉽 J-1(전문 12/18개월) 진행비 내역

진행안	주요사항	세부내역	소비자금액(12)	소비자금액(18)
1차	계약금		₩ 500,000	₩ 500,000
2차	DS-2019 Sponsor Processing Fee Placement Fee	DS-2019 Sponsor Fee 발급수속 및 대행 수속비 미국 Placement, 인터뷰 및 업무 대행	₩ 5,400,000	₩ 6,000,000
3차	J-Visa Processing The Other Processing	비자인지대, Sevis Fee, 왕복 항공료, Housing Deposit 등	별도 개인 부담	별도 개인 부담

현지숙박 (Housing)

인턴쉽이나 W&T 참가자들은 원칙적으로 참가자 본인들이 현지 도착 후 숙박 지를 찾아서 본인들이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 (주)이솔교육에서 인터넷이나 현지조사를 하여 아파트 등을 알아보아 주거나 현지 human resources information agency 회사에서 알아보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아파트 등은 최소한 1 개월 월세를 Deposit 개념으로 지불을 하고 추가로 1 개월치 월세를 내면서 입주하게 됩니다. 즉 2 개월 치를 내면서 입주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 인턴들은 미국에서 2 베드룸 (1 베드룸에 2 명이 거주) 4 명이 1 아파트먼트에 사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며, 이 때 총 월세는 \$ 800 -1,200 정도입니다. 대개 침대, 소파, 냉장고, 가스렌지 등 숙식에 필요한 것들은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없을 경우 추가로 렌탈을 해야 합니다. 현지 한 달 생활비는 먹고, 자고, 이동하는 비용으로 약 \$600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방 2, 거실 1, 부엌 1 의 약 20 평의 아파트에서 4 명이 생활한다고 기준하면, 월세 \$250, 식비 \$100, 교통비 \$100, 공과금 \$50, 각종생활비 \$100 정도이니 약 \$ 600 이 기본 생활비입니다. 결론적으로 1 개월 실습수당(\$ 1500 - 1,800)에서 생활비(\$600)를 제하더라도 본인 용돈 정도는 남습니다.

※ Convention, Business 등 전문 인턴쉽은 참가자와 실습근무회사와의 계약규정 및 참가인원수, 현지 숙소규정, 회사 복지 서비스 등에 따라 틀려지므로 예상경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실습수당 (Payment)

현지 실습수당은 시간당 \$ 7.25 ~ 10.00 (월 \$ 1,040)입니다. 대개 2 주급이므로 2 주마다 PAY CHECK 이 나오며, 세금(Tax)은 주 별 마다 틀리며, 약 10%내외입니다. 일반적으로 1 일 8 시간 근무를 하며 주 5 일 40 시간 근무 후 주 2 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성수기 및 실습근무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Tax 는 추후 국내 귀국 후나 현지에서(매년 1 월-4 월)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2 주에 80 시간이 기본이나, 이 기본시간을 Over 하여 일을 할 경우에 초과 근무시간만큼 시간당 급여의 1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과 근무 시에는 매니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Tip 은 개인별 및 Job Position 마다 액수와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이 틀리므로 기대는 금물입니다. 현지에서 본인이 도박, 여행, 음주 등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는다면 영어교육 수강 및 학교생활을 하는 등의 정상적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실습수당입니다.

**참가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가 지원 시 영어 실력(English Skills)

Hospitality 인턴쉽은 기초회화가 가능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인된 영어 점수, 가령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영어점수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 인터뷰 시 본인의 참가동기, 목적, 계획등과 본인의 자기소개, 이력서 내용 등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인의 경우 자기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할 경우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고, 그것을 떠나 현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Job-position 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턴쉽 (Convention, Business 등) = 실습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 없는 수준의 영어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 시 본인의 참가동기, 목적, 계획, 소개, 이력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사담당자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가 되어야 합니다.

Training Position의 결정

국내에서는 근무지가 결정되어서 출국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실습근무지에서 오리엔테이션 후 호텔 등의 회사내부사정 및 규정 및 인사담당자의 결정 등으로 Training Position 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Hospitality Internship 의 경우 초기 4-6 개월은 하우스키팅, 룸 메이드, 세탁, Dish washer 등의 Entry level 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결정기준을 말하자면 이러한 기준은 실습근무지의 기준으로 일반화된 것은 없지만, 꼭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회사사정 및 규정에 있습니다. 각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되거나, 성수기 및 비수기에 따른 업무시간 및 포지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사계획상 어느 포지션에 많은 결원이 생겨서 인터뷰 없이 그 포지션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Entry Level 의 Position 만 남아있다면 그 업무를 보면서 당분간은 로테이션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본인의 이력서 내용과 영어 실력입니다. 곧 자신의 영어실력과 경력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 내용을 종합하여 인턴참가자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고, 그 판단도 인턴들의 영어실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참가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습 근무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인사담당자의 고유한 기준 및 선호도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특징으로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인사담당자(Human Resource Director) 나 업무책임자 (Department Manager)가 내리게 됩니다. 성격이 밝고 적극적인 태도, 지각없이 성실한 태도, 포지션에 맞는 실습태도 등이 관점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Job Position 에 대한 결정권은 근무지의 Human Resource (인사관리부)에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otation (로테이션, 순환근무)의 기준은 영어실력 40%, 본인 근무성적 30%, 본인 Job 희망선호도 30%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인턴들이 실제로 하는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망을 품고 가면 희망이 보입니다. 가장 낮은 업무를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 일어나지 않는 경우지만 Internship 특성상 실습도중에 실습지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10 일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 (주)이솔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참가자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 드립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출국 후에도 인턴쉽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인 연락과 참가자들의 생활보고서나 개인 Report 등을 요구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참가자들은 (주)이솔교육에서도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조기귀국 가능 여부(Return)

프로그램 참가자는 출국 전 본인의 실습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실습기간은 가급적이면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귀국을 해야 한다면, 대개 2 개월 전, 최소한 2 주 전에는 반드시 업체 매니저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데 따른 인력충원을 위한 조건입니다.

실습기간 도중에 국내에 위급사항 (병환, 경조사)이 있으면 현지 매니저의 승낙을 받고, IAP-66 스폰서 기관에 통보 및 승낙을 받고, 한국에 귀국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항공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본인사정으로 조기귀국 경우 계약파기에 준하므로 APT 보증금이 약 \$ 200-300 이면 이 보증금을 못 받을 것입니다.

불법체류 및 비자전환

현지에서 비자전환(F-1 visa(유학 및 어학연수용) 및 B-1,2 visa(관광용), H-1B visa(취업용)등)은 불가능하며, 한국으로 귀국 후 비자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실습관리기관에서 해고될 경우에도 가능한 통보한 기일 내로 무조건 귀국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은 참가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이 불법체류로 인한 회사피해를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Work & Travel 과 인턴쉽의 차이점

Work & Travel 과 인턴쉽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참가기간과 지원 자격입니다.

Work & Travel 은 참가기간이 4 개월인 단기프로그램이고 인턴쉽은 12 개월, 18 개월의 장기프로그램입니다.

또한 Work & Travel 은 대학생(전공무관)만이 참가가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인턴쉽은 대학생 및 졸업생(전공 2 년 이상의 해당자)이 참가가 가능합니다. Work & Travel 은 단기간의 미국문화 체험과 문화교류를 중시하는 프로그램이라면, INTERNSHIP Program 은 전공을 살려서 직무에 대한 일을 배우고, 경험과 경력을 쌓는 교육효과를 비중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INTERNSHIP 은 해당전공과 어느 정도의 영어 회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을 향한 첫 도전을 (주)이솔교육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이솔교육 임직원 일동